

신청자격과 방법이 궁금해요~

깨끗한 축산농장은
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
안전하고 악취발생이 적은 지속가능한
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.

깨끗한 축산농장 안내 및 문의

신청대상

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2조)하고, 축산업허가(「축산법」 제22조)를 받은 자

대상축종

한우, 육우, 젓소, 돼지, 닭, 오리, 말 농장에 대해
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
신청절차

'깨끗한 축산농장'을 신청하고자 하는
축산농가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
(<https://www.lemi.or.kr/oms>)
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

* 고령화 등으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농가주는
축산환경관리원 또는 소속 지역 축산과에 문의

시스템 사용자 가입 방법

- ① 사용자 가입 누르고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,
- ② 일반 회원 선택,
- ③ 필수정보 입력 후 가입(아이디 중복확인 필수)

구비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~

구비서류



- ① 사업신청서, ② 기본요건 확인사항,
- ③ 자가진단표, ④ 서약서,
-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⑥ 축산업 허가증

축산악취관리시스템(<https://www.lemi.or.kr/oms>)
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

자가진단 프로그램 안내



깨끗한 축산농장 평가항목별 사전
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자격, 지정기준 및 개선사항을
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1 **접속방법**
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→ '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바로가기' 선택
- 2 **세부 이용방법**
누리집 자가진단 사용자 매뉴얼 확인

국민이 신뢰하는 축산업

깨끗한 축산농장 신청·지정안내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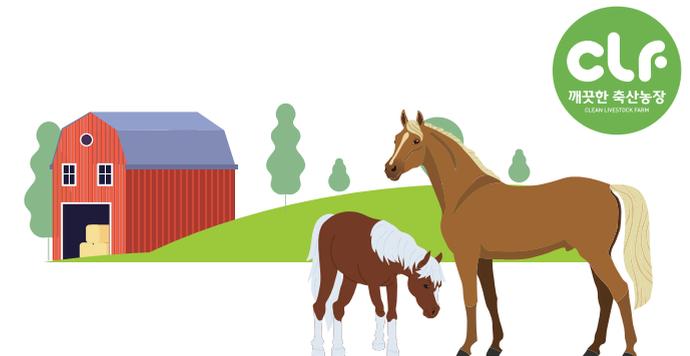
깨끗한 축산농장이란 무엇인가요?

깨끗한 축산농장이란?
가축의 사육밀도 준수, 가축분뇨
적정 처리,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
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
말합니다.

왜 참여해야 할까요?

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시작

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받은 농가는
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혜택을
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여 농가는
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고,
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에게
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
있습니다.





축산농가가 스스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장입니다.
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절차

▶ 신청 준비(연중)



▶ 지정 신청 및 심사(연중)

* 축산농가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 (<https://www.lemi.or.kr/oms>)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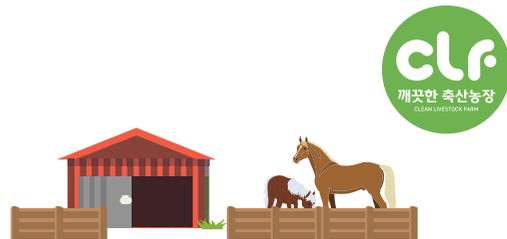
▶ 현장평가(2~11월)



▶ '깨끗한 축산농장' 지정(분기별)



▶ 사후관리(연 1회 이상)



1 평가자는 누구인가요?

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 평가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
축산환경관리원 직원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활동하는 축산환경컨설턴트 등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* 평가자가 착용하고 있는 명찰로 신분 확인

2 최종 지정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분기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.

분기별 지정 기간

1분기	1~3월 평가	→	4월 지정
2분기	4~6월 평가	→	7월 지정
3분기	7~9월 평가	→	10월 지정
4분기	10~12월 평가	→	12월 지정

* 절차 및 일정은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3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?

- ① 지자체 지원사업 우선 순위 선정
- ②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한도액 20% 상향
- ③ 친환경축산직불금(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) 지원한도 20% 상향

4 사후관리와 지정 유효기간이 궁금해요!

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농장 점검을 실시하고, 유효기간은 지정 후 5년으로 마지막 연도에 지정연장평가(재지정)를 진행합니다.

재지정 희망 시

깨끗한 축산농장 교육 수료 필수
축산환경 교육시스템(<https://www.lemi.or.kr/edu/>) 가입
→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 수강신청 → 교육 과정(1시간) 수료

5 지정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
분실, 농장 정보 변경 등으로 지정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·군·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.

6 시스템 상 정보가 다르거나 농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땐 어떻게 하나요?

아래 메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(등록)증을 보내주세요.

문의사항접수

연락처: 044-550-5054/5052/5058/5059
메일: choism@lemi.or.kr



구분	기본요건 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※ 가축분뇨의 전량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'예'에 √ 표시 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육 마릿수(신청일 기준)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록·관리 -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대장 작성·관리 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
* 위의 각 항목 중 '아니오'에 해당되는 항목이 하나 이상인 경우 기본요건 미흡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.
※ 관련 법령: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가축분뇨법」, 「축산법」

컨설팅 문의

한국마사회 제주목장
연락처: 064-780-0182
메일: smodori@kra.co.kr





신청자격과 방법이 궁금해요~



구비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~



깨끗한 축산농장이란 무엇인가요?

깨끗한 축산농장은

축사 내 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안전하고
악취발생이 적은 지속가능한
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.

깨끗한 축산농장 안내 및 문의

신청대상

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2조)하고, 축산업허가(「축산법」 제22조)를 받은 자

대상축종

한우, 육우, 젓소, 돼지, 닭, 오리, 말 농장에 대해
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
신청절차

‘깨끗한 축산농장’을 신청하고자 하는
축산농가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
(<https://www.lemi.or.kr/oms>)
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

* 고령화 등으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농가주는
축산환경관리원 또는 소속 지역 축산과에 문의

시스템 사용자 가입 방법

- ① 사용자 가입 누르고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,
- ② 일반 회원 선택,
- ③ 필수정보 입력 후 가입(아이디 중복확인 필수)

구비서류



- ① 사업신청서, ② 기본요건 확인사항,
- ③ 자가진단표, ④ 서약서,
-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⑥ 축산업 허가증

축산악취관리시스템(<https://www.lemi.or.kr/oms>)
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

자가진단 프로그램 안내

깨끗한 축산농장 평가항목별 사전
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자격, 지정기준 및 개선사항을
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접속방법

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→ '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바로가기' 선택



세부 이용방법

누리집 자가진단 사용자 매뉴얼 확인

국민이 신뢰하는 축산업

깨끗한 축산농장
신청·지정안내!



깨끗한 축산농장이란?

가축의 사육밀도 준수, 가축분뇨
적정 처리,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
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
말합니다.

왜 참여해야 할까요?



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시작

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받은 농가는
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여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
축산물을 생산하고,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
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드는데
이바지할 수 있습니다.



지원사업 우선순위+한도상향



안전한 축산물



쾌적한 환경 제공



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7층(나성동 752)
TEL. 044-550-5000 FAX. 044-865-9871



축산농가가 스스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장입니다.
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절차

• 신청 준비(연중)



• 지정 신청 및 심사(연중)

* 축산농가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 (<https://www.lemi.or.kr/oms>)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



• 현장평가(2~11월)



• '깨끗한 축산농장' 지정(분기별)



• 사후관리(연 1회 이상)



Q 평가자는 누구인가요?

A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 평가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
축산환경관리원 직원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활동하는 축산환경컨설턴트 등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* 평가자가 착용하고 있는 명찰로 신분 확인

Q 최종 지정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A 분기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.

● 분기별 지정 기간 ●

1분기	1~3월 평가	→	4월 지정
2분기	4~6월 평가	→	7월 지정
3분기	7~9월 평가	→	10월 지정
4분기	10~12월 평가	→	12월 지정

* 절차 및 일정은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Q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?

A ① 지자체 지원사업 우선 순위 선정
②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한도액 20% 상향
③ 친환경축산직불금(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) 지원한도 20% 상향

Q 사후관리와 지정 유효기간이 궁금해요!

A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농장 점검을 실시하고, 유효기간은 지정 후 5년으로 마지막 연도에 지정연장평가(재지정)를 진행합니다.

● 재지정 희망 시 ●

깨끗한 축산농장 교육 수료 필수
축산환경 교육시스템(<https://www.lemi.or.kr/edu/>) 가입
→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 수강신청 → 교육 과정(1시간) 수료

Q 지정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
A 분실, 농장 정보 변경 등으로 지정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·군·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.

Q 시스템 상 정보가 다르거나 농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땐 어떻게 하나요?

A 아래 메일로 축산업 허가등록증을 보내주시면 수정 및 등록해 드리겠습니다.

● 문의사항접수 ●

연락처: 044-550-5054/5052/5058/5059
메일: choism@lemi.or.kr



구분	기본요건 여부	
•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•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(말 제외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• 소독시설(방문자, 차량) 설치(말 제외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•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※ 가축분뇨의 전량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'예'에 √ 표시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•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(말은 사육 마릿수만 작성) ※ 신청일 기준 사육 마릿수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사육면적(m ²)	적정 사육면적(m ²)	면적 비율(%)
*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이용 (https://www.mtrace.go.kr/)		
• 기록·관리		
-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(말 제외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
-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- 정화처리 관리일지 (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)		

* 위의 각 항목 중 '아니오'에 해당되는 항목이 하나 이상인 경우 기본요건 미흡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※ 관련 법령: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가축분뇨법」, 「축산법」